

부산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567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5677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1가단32327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우종진, 한성준

변론 종결 2024. 10. 11.

판결 선고 2024. 11. 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1가단32327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40,788,5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0,758,560원 및 그 중 19,888,14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40,788,5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788,560원 및 그 중 1,388,140원에 대하여 202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8,500,000원에 대하여 202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의 2023. 4.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청구취지 제2항의 '1,388,140원 및 이에 대하여'와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오키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7 내지 3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 " 부산지방법원 2016소42770호"를 "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42770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채무가 다수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아들인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0551 판결 참조),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이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을 제4, 7, 8 내지 20, 28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21.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0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에 피고의 채무가 과다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부모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부모의 명의로 하지 않고 자식의 명의로 등기한 후에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는 명의신탁 뿐 아니라 증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피고가 아들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 "후 된 사실이"를 "후 말소된 사실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하제4행 "피고는 원고에게 40,788,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피고는 원고에게 40,788,560원과 그 중 원금 19,888,14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23. 3. 15. 기준 원고의 채권액은 원금 19,888,140원, 이자 20,900,420원, 합계 40,788,560원이고, 원고는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성호

판사박우중

판사이광영

별지